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11.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21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19. 12. 31.)에
따른 안전 기준 예외에 대한 규정과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조례로 정하고, 구민의 배출 편의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폐기물관리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 (안 제8조의2)
- 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중 재활용가능 자원에
배출방법 및 품목별 배출요령 규정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7)
- 다.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기한 개정 (안 제27조제3항)

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세분화 (별표 3)

마. 자구수정 (안 제2조제6호, 안 제13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10. 14. ~ 11. 3. / 20일 간)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 '19. 12. 31.)에 따른 안전 기준 예외 사항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규정하고, 구민의 배출 편의 개선 및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 및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8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9조와 안 별표 7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이 개정(2020. 8. 24.)되어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이 추가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정확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기한을 명시하였으며,
- 안 별표 3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배출신고의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품목 신설 및 규격을 세분화 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안전기준에 대하여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였으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따라 재활용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의 품목 신설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대형 폐기물의 다양화에 따른 배출 신고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여 주민의 배출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